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 관련

-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19조 및 [별표 1]
-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12~13조 및 [별표 3~4]
-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22조의4~5 및 [별표 2]
- 라. 「초·중등교육법」 제21~21조의2, 제22조의4~5 및 [별표 2]
- 마.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4조, 제6~9조, 제12조 및 [별표 1~3]
- 바. 202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신청 대상

- 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나. 상담심리전공은 제외하며, '6-라. 전문상담교사(1급) 관련' 참조

3. 신청 기간: 2026. 7. 8.(수)~7. 16.(목)

※ '5-나.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검사기관별 발급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요망

4.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 방문 제출

- 1) 제출처: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J417호 대학원교학팀
- 2) 제출시간: 평일 10:00~16:00(금요일은 14:00까지), 휴게시간 12:00~13:00 제외

나. 등기우편 제출

- 1) 신청 기간 내 대학원교학팀에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우편물 분실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2) 주소: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J417호 대학원교학팀

5. 제출서류

구분	제출 내용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붙임 2] 양식 참조
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검사기관에 요청(검사 종류보다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함) 2)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 문구가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3)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4)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함)
다. 영양사 면허증 사본	영양교사(2급) 신청자에 한하며 본교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만 인정

※ 성범죄 경력 확인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근거로 대학원교학팀에서 종로경찰서에 일괄 요청하여 확인 예정

6. 기타 사항

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붙임 3] 참조

나. 신청 기간 내 미신청,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및 석사학위 취득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전문상담교사(1급) 관련

1)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은 상명대학교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졸업 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함

2)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은 신청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함(결격사유 확인 등 포함)

7. 문의처: 대학원교학팀(서울캠퍼스 대학본부 J417호 / 02-2287-6432)